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지 Vol. 10, No. 6, pp. 1~9, 2005 ≪總設≫

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책임

조 은 래*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The Liability on the Damage of Soil Pollution

CHO, EUN′ RAE*
Institute for comparative law, P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BSTRACT

Soil is polluted by an agricultural chemicals, the effluence of a crystal and sewage sludge, illegal discharging of waste water or waste matter and so on. Soil pollution that accompanies a groundwater and the crops contamination has a large effect on people′s living. By polluters pay principle, when a soil was polluted, polluters take the responsibility of clean-up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The character of the responsibility is a strict liability. When joint polluters exist in a soil pollution, they bear collective responsibility. But they are exempted from obligation in case of a natural calamity and war. The polluters who are poor contribution of pollution take a partition responsibility but it is not easy to prove that. The concerned parties of purification liability in a soil pollution are polluter, an owner or occupant of a contaminated site, and a grantee. But when we do not appoint the polluter or he cannot do a cleanup, municipal must put in effect the purification. In such a case, another parties who are related to the contamination should take upon themselves a liability. The province of responsible parties, therefore, is required to extend to an owner or operator of a facility, a carrier and lender.

Key words : Soil pollution, Polluters pay principle, A strict liability, Collective responsibility, The concerned parties of liability

요 약 문

토양오염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배상과 토양오염정화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러한 책임은 민사상의 일반적 책임과는 다르다. 토양환경보전법상으로는 피해에 대하여 과실책임이 아닌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있으며, 공동의 책임인 경우에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것은 피해자의 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토양정화책임과 그에 따른 비용책임에 대하여도 소급책임, 엄격책임, 연대책임을 지게하고 있다. 다만 천재지변과 전쟁으로 인한 경우에는 면책하고 있다. 책임당사자는 오염유발자와 토양오염시설의 소유 또는 점유자 및 운영자, 그리고 그 시설을 양수한 자 및 인수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책임당사자가 불명하거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책임을 질 수 없는 경우에 결국 국가가 책임을 짐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킬 염려가 있다. 따라서 책임당사자의 범위를 확대시키거나 정화비용에 대한 기금제도의 활용이 요청된다.

주제어 : 토양오염, 오염원인자부담의 원칙, 정화책임, 무과실책임, 연대책임

1. 서 설

토양오염은 대기오염, 수질오염과 함께 환경오염의 중요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1998년 초 IMF(국제통화기금) 금융사태 이후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의 도산·휴업으로 수만 톤의 산업폐기물을 소각하지 못하고 방치하여, 폐수가

*Corresponding author : cho6272@emc.or.kr
원고접수일 : 2005. 10. 5 게재승인일 : 2005. 11. 10
질의 및 토의 : 2006. 2. 28 까지

흘러나와 하천 및 토양 지하수를 크게 오염시키고 있다. 또한 공장이나 금속광산지역, 군부대 및 각종 종합사격장 등에서의 중금속과 쓰레기에 의한 토양오염이 근래에 증가하고 있다. 토양이 오염되면 지하수를 함께 오염시키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토양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그로 인한 지하수오염에 의한 피해도 동반하게 된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3에서는 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으로 토양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정화책임을 규정하고 있다(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3 ①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오염이 천재·지변 또는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오염원인자가 2인 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오염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오염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인자로 본다. 다만, 제3호(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경우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시키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시킨 자 2.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 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 및 합병·상속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4.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 즉 토양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공동행위에 의한 연대책임, 토양정화책임, 그리고 책임의 주체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현행의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책임을 중심으로 그 내용과 주체를 고찰하고자 한다.

2. 토양오염피해의 배상책임

2.1. 무과실책임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3 제1항). 이것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무과실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확대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토양오염피해에 관하여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입법에 의하여 정립한 것이다. 1977년에 제정된 환경보전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사람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만 무과실책임이 인정되고 있을 따름이고,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인정되고 있지 않아 재산피해의 구제에 관하여는 민법상의 과실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이 법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대하여 최초로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그 의의가 있으나 당시의 재산피해에 대해서도 거의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배상책임을 인정하게 된 판례·학설보다도 뒤떨어진 입법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洪天龍, 1992, "環境汚染被害의 救濟", 환경법연구 제14권, 한국환경법학회, 10면).

무과실책임이란 고의나 과실 없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근대법은 자기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는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왔으며, 현행의 우리 민법도 과실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생기는 여러 가지 폐해의 시정책으로 사회정의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과실책임주의를 수정하는 무과실책임주의가 대두하게 되었다. 그 원인은 근대산업의 발전으로 많은 위험이나 환경오염을 수반하는 기업이 막대한 이윤을 취하는 반면,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자가 있어도 과실책임주의로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사회적 불공평이 생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사회적 불공평의 시정책으로 무과실책임주의를 주장하게 되었는데, 그 이론적 근거로는 사회적 위험이나 오염을 발생케 한 자는 그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위험책임주의와, 또한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이익 중에서 배상을 시키는 것이 공평의 원리에 맞는다는 보상책임주의가 있다. 이러한 무과실책임주의는 과실책임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는 광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특수분야에서 예외적으로 공평을 위하여 묻고 있으며, 판례에서도 이를 채택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과실을 입증하지 않고 배상책임을 주장하면 된다.

2.2. 연대책임

2.2.1. 복수원인자의 관련공동성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3 제2항에서는 오염원인자가 2인 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오염원인자에 의하여 토양오

염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오염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것은 2인 이상의 복수오염원인자가 공동으로 토양오염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그 피해가 누구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각자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연대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복수의 오염원인자간에는 관련공동성이 있어야 하는 바, 그것은 공모나 공동의 인식 등이 필요 없이,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지면 족하다. 또한, 공동책임을 부담함으로써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으므로 복수원인자의 주관적 공동유무를 묻지 않고, 객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공동성의 범위에 대해서는 일본의 四日市공해판결(津地 四日市支判 昭和47年 7. 24. 判時672號 30면)에서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판결에서는 「기업이 집단적으로 입지하여, 시기를 대체로 같이하여 조업을 개시하여, 매연의 배출을 계속한다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으면 객관적 관련공동성은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관련공동성을 가지는 기업사이에서는 각자의 행위가 단독으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지 않아도 다른 것과 합쳐서 피해발생의 원인으로 되고 있는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각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게다가 동 판결은 「통상의 관련공동성을 넘어서 보다 긴밀한 일체성이 인정되는 기업간에 있어서는, 어느 공장의 매연이 소량이므로 그 자체로서는 결과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주목되고 있다(原田尙彦, 1995, 環境法, 弘文堂, 41-42면; 淡路剛久・寺西俊一, 1997, 公害環境法理論の新たな展開, 日本評論事, 167면). 이것에 의해, 자본계통을 같이 하는 콤비나이트(기업결합) 등은 환경오염책임에 대해서는 소위, 하나의 기업체로 간주되어지고 그것으로부터 발생한 복합오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콤비나이트를 구성하는 각 기업에게 공동불법행위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2.2.2. 연대책임의 성질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2항에서는 사업장 등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사업장 등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업자는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3 제2항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민법 제760조 제2항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이 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됨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2항과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3 제2항은 무과실책임이라는 점에서 다르지만,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그리고 가해자가 불명인 경우의 토양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있어서는 그 중 한 사업자 또는 원인자가 자기는 전혀 오염피해를 야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지역에서 피해의 정도가 위험한도를 초과하였지만, 각 사업장 또는 원인자 단독으로는 그 위험한계에 미달하는 오염물질만을 배출한 경우에는, 각 사업장이 단독으로 당해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더라도 면책되지 않고 연대책임을 진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환경법상 배출허용기준 이내의 배출은 허용되므로 어떠한 사업장이라도 공장을 가동하지 않는 한 하천수질에 영향을 미치니 아니한 사업장은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하천은 어느 정도는 오염되어 있다. 그런데 어느 사업장에서 당해 사업장의 배출만으로는 하류에 있는 양식장의 어패류를 폐사시킬 수 없지만, 기존에 약간 오염되어 있는 수질과 결합하여 어패류를 폐사시켰다고 할 때에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한 사업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워 손해액 전부를 배상하라고 할 수 있는가? 만약 연대책임이 인정된다면 어떤 사업자도 연대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사업자는 없다. 이러한 논리라면 반월공단이나 인천공단에서 악취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있다면 피해자는 시화공단이나 인천공단에 있는 악취배출업소 전체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예로서 갑은 1%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을은 99%의 오염물질을 배출하였을 때, 갑에게 공동불법행위자라는 이유로 연대책임을 물어 100% 배상하라고 할 수 있는가? 또한 갑은 9년 전에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오염대책기준의 10%를 배출하였고, 갑이 그 후 사업장을 양도하여 을이 5년 전부터 토양오염대책기준의 30% 배출하였으며, 을이 병에게 사업장을 양도하여 병이 3년 전부터 대책기준의 70%를 배출하여 대책기준이 초과되었다고 할 때, 병으로부터 다시 사업장을 양수한 정이 갑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더구나 환경피해는 무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되므로 갑에게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는 불문하게 된다. 을과 병이 부도로 무자력자라면 갑은 구상권도 행사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환경피해에 있어서는 공동불법행위의 인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대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사업자는 없다. 이는 기업을 너무 위축시켜 산업발전에 장

해요인이 된다고 한다(趙顯權, 1999, 環境法, 法律文化院, 303면 주 15) 참조). 그리고 연대책임의 성질은 부진정연대채무로 보는 것이 판례(대판 1983. 5. 24, 83다카208; 대판 1991. 10. 22, 90다20244.)와 다수설의 입장이다.

부진정연대채무란 연대채무자(즉 복수의 오염원인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연히 발생한 채무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여러 명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채무에 관해 각각 독립해서 그 전부의 급부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점은 연대채무와 같다. 그러나 채무자 사이에 주관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그 중 한 사람에 대해 생긴 목적도달 이외의 사유는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한 사람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그것이 채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면 모두 상대적 효력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절대적 효력 있는 사유의 범위는 반드시 채권을 만족시키는 것에 한하지 않으며, 상당히 넓은 범위의 것이 절대적 효력을 가진다(민법 제416조~제422조). 즉 이행청구는 시효중단의 효력에 의하여 채권을 강화시키는 것이 되지만, 그 이외에 경개·상계·면제·혼동·소멸시효 등은 모두 채무의 소멸에 관한 것으로서 그것이 절대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채권의 효력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된다. 그 결과 우리 민법상 연대채무보다는 부진정연대채무가 채권담보의 작용에 있어서 더 강력하다. 즉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의 채권의 효력이 연대채무에 있어서의 채권의 효력보다 강하게 된다(예를 들면, 자가용 운전기사가 사고를 낸 경우에 그 운전기사는 불법행위자로서 당연히 책임이 있으며, 자가용 소유자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 여기서 자가용 소유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연히 연대책임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데, 이를 부진정연대채무라 한다. 그런데 이 경우에 피해자가 사고를 낸 자가용 운전기사에 대해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할 의사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인 자가용 소유자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즉, 피해자는 운전기사와 소유자를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자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유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 운전기사와 소유자 가운데 어느 한쪽과 합의를 했더라도 다른 한쪽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각 원인자의 손해에 기여한 비율 여하를 고려하지 않고, 임의의 원인자에 대해서 손해액 전액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이 인정되면 피해자는 유리한 지위에 놓여지게 된다.

한편, 부진정연대채무는 연대채무와 달리 채무자 사이에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단, 판례에서는 채무자 사이에 내부적으로 특별한 법률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구상권을 인정하고 있다(대판, 1996. 3. 26. 96다3791; 대판, 1997. 12. 23, 97다42830).

3. 토양오염의 정화 및 비용책임

토양오염의 원인자는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하며, 복수의 오염원인자는 연대하여 정화할 책임이 있다. 다만, 토양오염이 천재·지변 또는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의 오염원인자책임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정화책임을 부담하는 오염원인자는 토양오염원의 제거 또는 회복조치, 회복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과 이 비용에 의거하여 기타의 자가 지출한 필요한 대책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생각건대 자원에 기여한 손상, 파괴, 손실에 대한 손해 및 손상 등의 평가에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과 인체 또는 건강에 대한 영향조사에 필요한 비용 등에 대하여는 그 사정이 곤란한 것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는 그 기능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여겨진다. 이에 대하여는 연구와 검토가 더 요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책임당사자 중 오염물질의 방출 또는 그 위험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는 상기의 비용 또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외에, 행정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고서 제거조치 또는 회복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때문에 지출된 비용과 일정액의 손해배상을 청구 받을 가능성이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정화작업을 실시하거나, 또는 책임당사자에게 정화작업을 실시시킬 수 있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책임당사자에 대해서, 후자의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책임당사자가 다른 책임당사자에 대해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하수오염의 경우에 지하수를 오염시킨 자는 자기비용으로 오염된 지하수를 직접 정화해야한다. 환경부는 최근 지하수수질보전을 위한 淨化命令制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1년 하반기 중으로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하수법 제16조의2 제1항에서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을 규정하고 제16조의 3에서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는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측정 결과 지하수의 수질이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지하수의 수질을 복원할 수 있는 정화작업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주유소와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 등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자는 오염방지시설과 지하수오염여부를 주기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수질관측정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특히 지하수 수질측정 결과 수질이 환경부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오염을 유발한 시설관리자 등은 빠른 시일 안에 오염정화계획을 세워 오염된 지하수를 직접 정화해야 한다. 오염방지조치 또는 관측정의 설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수질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진다(지하수법 제37조의 2, 제37조의 3참조). 또 지하수오염을 직접 유발하는 방치 폐공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시장. 군수가 책임지고 원상복구 해야한다.

3.1. 토양정화에 대한 소급책임

현재의 토양오염이 과거의 행위에 의하여 오염된 경우에, 무과실책임으로 그 정화에 대한 책임을 소급적으로 물을 수가 있다. 예컨대 오염된 땅의 매입자는 정화책임과 함께 오염물질의 처리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토양오염이나 지하수오염이 과거의 행위에 의하여 오염이 된 경우에는 그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즉 무과실책임으로 그 정화에 대한 책임을 소급적으로 물을 수 있는 것이다. 2001년 3월 28일에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2를 신설하여 토양환경평가를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1항에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를 양도·양수하거나 임대·임차하는 경우에 양도인·양수인·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당해 시설이 설치된 부지 및 그 주변지역(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이하 "토양환경평가"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급책임을 인정하는 사례로서 대표적인 미국의 판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加藤一郎외 3인, 1996, 土壤汚染と企業の責任, 有斐閣, 144면 이하; 稻田仁士, 1995, アメリカ環境法, 木鐸社, 128면 이하 참조).

3.1.1. Ohio v. Georgeoff(1983년 오하이오북부지구연방지방법원) 사건

이 사건은 수송자인 피고가 슈퍼기금법은 입법이전에 실시되어진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툰 사건이고, 소급책임에 대해서 검토를 한 초기의 것이다. 슈퍼기금법이란 1980년 12월에 성립한 포괄적환경대처보상책임법(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 CERCLA라고 한다)을 가리키는데 동법은 1986년 10월에 「슈퍼기금법수정·재수권법」(Superfund Amendments and Reauthorization Act : SARA라고 한다)에 따라 대폭적인 수정을 받아, 현재에는 이 SARA에 따라 수정된 CERCLA를 슈퍼기금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보통이다(稻田仁士, アメリカ環境法, 123면; 多賀谷晴敏, 1996, "包括的環境對處補償責任法", 世界の環境法, 國際比較環境法センタ, 48면. 이에 관한 상세는 졸고, 1999, "美國의 슈퍼基金法(Superfund Law)에 대한 考察", 比較法學 第10集, 釜山外國語大學校 比較法硏究所, 참조).

사건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인 주정부는 슈퍼기금법은 계속하고 있는 공적 뉴센스(public nuisence)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고, 이 법률에 근거해서 부과된 책임은 성질적으로 소급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본건에서 제소되어 있는 공적 뉴센스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모든 슈퍼기금법의 입법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책임을 과하는 것에는 법률을 소급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소급적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후, 법원은 슈퍼기금법의 소급책임이 절차적으로 허용되는가 되지 않는가를 검토했다. 이 점에 관해서 원고인 주정부는 절차적인 법률, 구제적 제정법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적용이 인정되고 위헌이 아니라고 한 후, 시민의 건강프로그램으로서 슈퍼기금법은 이것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헌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것에 대해서 법원은 슈퍼기금법은 공공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소급적용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3.1.2. United States v. Conservation Chemical Co (1985년 몬타나서부지구연방지 방법원)사건

이 사건은 슈퍼기금법의 소급적용이 헌법의 due process (適正過程條項, 즉 법의 적정한 과정을 의미한다)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 판례이다. 법원은 슈퍼기금법은 시행일 이전에 성립된 행위에 대해서 새로운 책임을 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적이라고 판단했지만, 이와 같은 경제법의 경우에는 합헌이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추정되어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슈퍼기금법의 소급적용을 정당화할 사유를 검토한 결과, 슈퍼기금법을 유해폐기물처리업계 및 유해물질을 발생시킨 업계에게 과거의 잘못된 행위를 교정시키고, 폐쇄 후의 폐기물처분장으로부터 발생된 위험에 대처시키는 수단으로서 입법화되어졌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입법목적을 보면 슈퍼기금법의 소급적용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소급적용을 하더라도 헌법의 due process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거기에 법원은 법률이 due process 조항에 저촉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의회가 책임안을 규정할 때에 자의적으로 입법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3.2. 토양정화에 대한 연대책임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수인인 경우에 그 정화책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그리고 연대책임자 간에는 상호의 정화비용을 청구를 할 수 있다. 즉 정부당국으로부터 정화의 책임주체에 지정된 자는, 같은 형태로 지정을 받은 연대책임자 또는 지정을 받지 않은 다른 책임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오염유발의 기여도에 따른 책임의 분담이 문제가 된다. 예컨대 책임당사자는 각자 자기의 분담비율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단독으로 당해 오염시설 정화의 모든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장기간에 걸친 축적성의 토양오염의 경우에, 그 관련당사자가 다수이고 그들의 정확한 분담비율을 과학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렵고, 또 이미 도산하거나 지불능력이 없는 책임당사자가 있다면 오염정화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多賀谷晴敏, 앞의 논문, 50면; 東京海上火災保險株式會社 編, 1995, 環境リスクと環境法(美國編), 有斐閣 160면).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각 당사자의 행위와 그 결과의 환경에 대한 손해가 완전히 분리될 수 있으면 연대책임은 지지 않지만, 사실상 이 분리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오염에 관한 기여도가 적은 일부의 당사자가 정화비용전액지불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비판되고 있다(志田 愼太郎, 1996, "美國における土壤・地下水汚染の淨化對策", 環境研究 No. 104, 62면). 여기에 대한 미국의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加藤一郎 外 3인, 앞의 책, 137면 이하; 稻田仁士, アメリカ環境法, 128면).

United States v. Chem-Dyne(1983년 오하이오남부지구연방지방법원) 사건은 슈퍼기금법에 근거한 책임에 연대책임을 적용해야하는가를 나타낸 최초의 판례이다. 원고는 대책비의 회수를 요구해서 24사의 발생자 및 수송자를 피고로서 소송했었다. 이 사건으로 연대책임이 인정된 이래, 연대책임은 넓게 인정되었다. 그리고 법원은 손해가 분할가능한가 아닌가는, 피해를 발생시킨 폐기물, 폐기물의 분량, 손해를 발생시킨 폐기물이 피고가 방출한 폐기물 자체이었는지 아닌지, 폐기물의 상호작용, 폐기물의 이동성 등의 사실문제에 대한 판단에 의하는 것으로 보았다. 본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전문가인 증인을 사용해서 손해가 분할가능한 것을 증명하려고 했지만 법원은 그 증명이 불충분한 것으로 연대책임을 인정하였다.

분할불가능한 손해(harm)에 대한 연대책임의 적용은 1983년의 이 Chem-Dyne사건이래, 판례상 일반적으로 되고 있다. 연대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책임분할의 기준이 되는 손해가 분할가능한 것을 증명해야한다. 손해가 분할가능하다는 것으로 연대책임을 과할 수 없었다는 판례는 United States v. Marisol, Inc.(1989년 펜실베니아중부지구연방지방법원)사건(United States v. Marisol, Inc., 725 F. Supp. 833(M. D. Pa. 1989)이 있다. 이 사건에서는 기여도가 근소한 책임당사자가 당사자이고, 연대책임의 적용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생각건대 정화비용을 분할할 때에는 형평이라는 관점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적은 당사자가 그 부분을 증명한 때에는 책임을 경감하여야 할 것이나, 손해를 분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단, 책임당사자들 사이에서 비용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는 책임당사자들이 원고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지느냐 아니냐의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3.3. 자력정화조치의 책임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서 사업자의 책무로서 사업자가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고 하여, 자력정화조치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업 등의 시설에서 유해물질 등이 현실적으로 방출되어 환경오염(토양오염) 및 환경훼손이 야기된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그로 인하여 시민의 건강, 공공의 복리에 긴급 또는 중대한 위험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위험과 염려에 대하여 책임당사자가 자력정화조치를 위한 수단을 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량에 의해 책임당사자와 협의하여 정화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으며, 또 책임당사자에게 정화

조치를 실시할 것을 행정명령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 단, 이 경우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력에 의한 정화조치나 행정명령, 어느 쪽이나 모두 취할 수가 있을 것이다. 또 정화대상이 되는 토양오염지역은 현재 조업 중인 것만이 아니라, 과거에 오염된 지역도 포함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책임당사자에게 정화조치라는 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것에 비해 오염을 없애라고 하는 작위명령적 유지명령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加藤一郎 외 3인, 앞의 책, 77면).

자력정화조치의 적용요건으로는 "사업활동으로 인한 유해물질의 방출로 환경오염(토양오염) 및 환경훼손을 한 경우와 그로 인하여 시민의 건강, 공공의 복리에 긴급 또는 중대한 위험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이것에 해당하는 것인지가 문제이다. 이 점에 관해서 "긴급 또는 중대한 위험의 존재"라는 요건은 엄격한 것은 아니며, 긴급사태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다.

B. F. Goodrich v. Murtha (1988년 Connecticut지구연방지방법원)에서는 위험(endangerment)은 잠재적 손해(potential harm)와 같은 것이며, 그 위험이 긴급한 것이면 현실의 손해는 몇 년간이라도 발생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한다고 하였다 [B. F. Goodrich Co v. Murtha, 697 F. Supp. 89, 19 ELR 20357 (D. Conn. 1988)]. 또한 긴급 또는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것을 입증할 필요는 있지만, 손해가 회복불능인 것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 요건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고, 그 위험이 어느 정도의 것인가 수량화될 필요는 없고, 시민의 건강 또는 공공의 복리에 대한 위험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한다 [United States v. Conservation Chemical Co., 619 F. Supp. 162, 16 ELR 20193(W. D. Mo. 1985)]. 더욱이 「공공의 복리」의 해석에 대해서는 건강 및 안전, 레크레이션, 미적인 것을 감상하는 이익 등의 환경상의 이익과 경제적인 이익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4. 면책사유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3 제1항 단서에서 토양오염이 천재·지변 또는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당사자는 정화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슈퍼기금법에서 정한 면책사유보다 더 엄격한 것으로 파악된다. 참고로 미국의 면책사유로는 불가항력 [United States v. Stringfellow, 661 F. Supp. 1053, 17 ELR 21134(C. D. Cal. 1987)참조], 전쟁 [United States v. Shell Oil Co., 23 CWLR 770(C. D. Cal. Jan. 16, 1992)참조], 제3자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많이 다툼이 되어 온 것이 「제3자」에 대한 것이다. United States v. Monsanto Co.(1988년 제4순회항소법원) 사건에 있어서 법원이 표시한 것과 같이, 제3자를 근거로 한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라고 되어 있다. 그 후, 비록 방출이 피고와는 전혀 무관한 제3자에 의해서 초래된 경우에 있어서도, 피고가 「상당한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은 것을 입증할 수 없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United States v. Monsanto Co. 858 F. 2d 160, 19 ELR 20085(4th Cir. 1988), cert, denied 490 U. S. 1106(1989)].

예컨대 오염되고 있는 사실을 모른 채 오염토지를 매수하고 스스로는 전혀 오염을 발생시키고 있지 않는 현재의 소유자입장에서 보면, 오염은 「제3자」로 인한 것이므로, 자신은 이 조항에 의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전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오염당사자인 경우, 그 당사자는 그곳에서 토지나 건물을 구입한 현재의 소유자로부터 보면, 제3자아니라고 하는 입장을 EPA(미국환경보호청)가 취해, 대부분의 법원이 이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오염에 어떤 책임도 없는 현재의 소유자, 관리자가 책임을 면하는 방법이 사실상 없어졌다. 이러한 불합리를 고칠 목적으로 SARA(수정기금법)에 의해 도입된 것이 선의의 매수자의 항변(innocent purchaser defense)이다. 이를 The Innocent Landowner Defense 라고도 한다(Kelley Drye, The Innocent Landowner Defense Under CERCLA : An Emerging Doctrine, http://www. Kelly drye. com/104210. htm.). 그러나 이 새로운 항변을 이용하여 책임을 면하는 것은 사실상 대단히 곤란하다.

4. 책임의 주체

토양오염에 있어서 그 피해 및 정화책임의 주체문제는 구체적으로 오염을 발생시킨 책임당사자가 분명한 경우나 개인에 의한 경우에는 별도로 하더라도, 오염발생의 기업활동에 있어서 책임당사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누구에게 정화책임을 물을 것인가, 또는 책임당사자(여기서는 주로 기업당사자를 의미 함)가 분명한 경우에도 당사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미국에서의 정화책임은 당해오염물질의 배출자만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의미에서 책임당사자의 범위를 좁은 의미로서 오염원인자에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인자와는 별도로 책임당사자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정화책임의 주체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3 제3항에 규정된 오염원인자를 의미한다.

4.1. 토양오염유발자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시키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시킨 자이다. 이에는 오염물질을 방출한 시설에 있어서 그 오염물질의 처분 또는 처리를 담당한 자도 책임을 진다. 일반적으로 유해물질을 처분하고 싶다고 하는 의도가 없고, 단순히 유해물질을 제3자에게 원재료 또는 완성품으로서 매각한 자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한다. United States v. Monsanto Co.(1989년)의 판결에 있어서는 제4순회항소법원은 피고가 오염물질의 발생자에 해당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① 피고이외의 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 있어서 피고가 오염물질의 처분 또는 처리를 하는 준비를 했을 것, ② 방출의 시점에 있어 피고가 발생시킨 오염물질이 당해 시설에 존재할 것, ③ 오염물질의 방출 또는 그 위험이 존재했을 것, ④ 방출이 정화비용의 발생을 초래했을 것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했다. 단, 원고는 피고가 오염물질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까지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단순히 방출된 오염물질이 피고가 발생시킨 물질과 과학적으로 유사한 점을 증명하면 된다고 판시했다(加藤一郎외 3인, 앞의 책, 土壤汚染と企業の責任, 131면).

4.2. 소유 및 점유자 또는 운영자

소유 및 운영자란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 포함) 또는 운영에 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를 의미한다. 이 때 소유자 및 운영자의 책임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소유의 사실과 지배의 유무라고 말할 수 있다. 참고로 미국의 슈퍼기금법에서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owner or operator)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i)선박에 대해서는 당해선박을 소유-운항(관리), 또는 나용선하고 있는자, (ii)육상 또는 해상시설에 대해서는 당해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그리고, (iii)소유권 또는 지휘·감독권이 도산, 저당유, 조세의 체납, 유기, 또는 유사의 이유로, 州 또는 지방정부에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도가 발생된 직전의 소유자, 운영자 또는 운영에 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는 당해선박 또는 시설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담보권보전을 제1의 목적으로 소유권의 징빙을 보유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제101조 (20) (A)-이하생략). United State v. Moore, 703 F. Supp. 455, 18 ELR 21272(E. D. Va. 1988)에서는 피고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에는 시설을 현재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고,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한편 운영자의 의의에 대해서는 당해 시설을 「자기의 계산으로」 운영하는 자로 보고자 한다. 이렇게 본다면 오염유발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부터 시설을 임대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자기 자신이 직접 그 운영으로 인한 이익과 손실의 주체로서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운영자에게 속할 것이나, 일정한 보수를 받고 운영을 보조하는 사람 또는 운영에 자문(consulting)을 해준 사람 등은 운영자에 속하지 않을 것이다(趙弘植, 1998, "土壤環境被害 관한 法的 責任", 환경법연구 제20권, 한국환경법학회, 306면).

4.3. 양수인 및 인수인

양수인이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 합병·상속" 그 밖의 사유로 오염유발자 및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의미하며, 경락인이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를 의미한다. 단 이들은 토양오염에 있어서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주의할 것은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의 주체는 이상에서 규정한 자가 아니더라도 책임당사자로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는 첫째 당해 시설에 융자를 해서 담보권을 취득한 대주 및 금융기관 등, 둘째 당해 시설 소유자 등의 모회사·주주, 경영자·임원·종업원, 승계자,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이 그것이다.

최근에, 미국의 슈퍼기금법에 관계된 판례에서는 「정화비용은 누가 부담해야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따라서 승계회사, 친회사, 융자자, 또는 기업경영자 등이 책임당사자에 해당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격한 논의가 있었다. 의회가 당초에 상정하고 있던 책임당사자의 범위를 법원에서는 확대해서 해석하고 있으며, 미국에서의 책임당사자의 해석을 둘러싼 판례의 수는 매우 많다. 예컨대 United States v. New Castle County, 727 F. Supp. 854(D. Del. 1989)에 있어서 관대한 법해석은 책임당사자의 범위가 공장관리자, 부동산소유기업의 경영진·주주, 사업창업자 등에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표적인 판례로 되었다.

5. 결 어

토양오염은 다른 환경오염에 비하여 농작물 및 과수, 지하수 및 하천 등의 오염으로 이어져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특질이 있다. 따라서 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통상의 과실책임보다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3규정, 즉 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규정(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과 더불어 헌법상의 기본권인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인 환경권을 구체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토양오염에 대한 피해는 그 원인자가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구제되고,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또는 정화비용)책임을 부담한다. 토양오염의 피해는 농작물의 오염과 지하수오염을 수반하며, 이로 인한 사람의 건강, 신체, 생명 그리고 재산적 피해를 발생시킨다. 이 때 오염원인자는 그러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서 무과실책임을 지며, 공동의 원인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 연대책임의 성격은 통상의 연대채무가 아닌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토양오염에 대한 피해의 구제와 정화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다. 다만 토양오염이 천재지변 또는 전쟁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책된다. 그리고 오염원인자의 기여도가 낮은 경우에는 책임당사자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 그 부담부분만큼의 분할책임을 진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현실적으로 입증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분할책임을 지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토양오염피해에 대한 책임당사자는 토양오염유발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 및 점유자와 운영자 그리고 양수인 및 인수자이다. 그러나 현행의 토양환경보전법상으로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오염원인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정화비용부담능력이 없는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는 오염원인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책임당사자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즉 토양오염시설의 담보권자 및 소유자 등의 모회사・주주, 경영자・임원・종업원, 승계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울 수 있을 것이다.

주의해야할 것은 토양오염의 책임에 대하여 오염원인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자력 등에 의해 책임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경우가 문제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오염토양개선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자력이 준비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정화의 실시를 연기하여 토양오염을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경우, 국민의 조세에 의해 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비하여 정화비용에 대한 기금제도 등의 활용이 요청된다. 향후 이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요구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趙顯權, 1999, 環境法, 法律文化院

趙弘植, 1998, "土壤環境被害에 관한 法的 責任", 환경법연구 제 **20**, 韓國環境法學會

洪天龍, 1992, "環境汚染被害의 救濟", 환경법연구, **14**, 韓國環境法學會

加藤一郎・森島昭夫・大塚 直・柳憲一郎, 1996, 土壤汚染と企業の責任, 有斐閣

多賀谷晴敏, 1996, "包括的環境對處補償責任法(슈퍼基金法)", 世界の環境法, 國際比較環境法センタ

淡路剛久・寺西俊一, 1997, 公害環境法理論の新たな展開, 日本評論事

稻田仁士, 1995, アメリカ環境法, 木鐸社

東京海上火災保險株式會社 編, 1995, 環境リスクと環境法(美國編), 有斐閣

植田和弘, 1990, "スーパーフンドの中間決算書-CERCLAからSARAへ", 公害研究

志田 愼太郎, 1996, "美國における土壤・地下水汚染の淨化對策", 環境研究, **104**.

野村好弘, 1993, "公害被害者救濟のあり方-公害法と公害防止事業費事業者負擔法を素材とし"ジュリスト, 1015號

原田尙彦, 1995, 環境法, 弘文堂

An Emerging Doctrine, http://www. Kelly drye. com/104210. htm.

B. F. Goodrich Co v. Murtha, 697 F. Supp. 89, 19 ELR 20357 (D. Conn. 1988)

United States v. Monsanto Co. 858 F. 2d 160, 19 ELR 20085 (4th Cir. 1988), cert, denied 490 U. S. 1106 (1989)

United States v. Shell Oil Co., 23 CWLR 770 (C. D. Cal. Jan. 16, 1992)

United States v. Stringfellow, 661 F. Supp. 1053, 17 ELR 21134(C. D. Cal. 1987)

United States v. Marisol, Inc., 725 F. Supp. 833(M. D. Pa. 1989)